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163405 판결 [구상금연대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26,680원 및 그 중 44,124,305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0. 8. 9. 설립 이후 농축수임산물 도매업 및 소매업, 수출입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C는 B의 대표자로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었다.

나. 원고는 2012. 12. 7. B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2건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원고와 B, C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일 이후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 따라 연이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는 2017. 7. 21.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처리 되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D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9. 26. D은행에게 ① 위 1차 보증에 따른 대출 원리금 90,948,821원(= 원금 90,000,000원 + 이자 948,821원)과 ② 위 2차 보증에 따른 원리금 33,592,010원(= 원금 33,250,000원 + 이자 342,010원) 합계 124,540,83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대위변제 당일인 2017. 9. 26. B로부터 29,680원을 회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10. 18. B와 C를 상대로 구상금채무 잔액 124,511,151원(= 124,540,831원 - 29,860원)과 위 회수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8원 합계 124,511,1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서 대위변제일인 2017. 9. 26.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차전27472호).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19. 원고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바. B는 2018. 12. 31.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사. 원고는 2019. 12. 31. C로부터 80,386,846원을 회수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21. 10. 25. 식품, 농수산물, 임산물 판매, 도소매, 유통, 수입, 수출, 무역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제2호증의 3)에 따르면 대표이사 E, 사내이사 F와 C가 각 등재되어 있고, 2024. 2. 15. 기준 피고의 주식은 E가 95%, F가 5%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외관상 B와 별개의 법인이긴 하나 실제로는 C가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B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고, 사실상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는 C의 1인 회사에 불과하거나 C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는 B 또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또는 B나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C의 1인 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되지도 않았다.

3. 채무면탈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제3호증, 을제3 내지 9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원세무서 및 평택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와 피고는 C가 사실상 지배하는 같은 회사로서 C가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설립은 B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가 C의 1인 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1) B는 신용보증사고일인 2017. 7. 21.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8. 12. 31.까지 1년 이상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의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7. 9. 26. B를 대신하여 보증채무금 90,948,821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변제 당일 29,680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B로부터는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었다. 그 뒤 원고는 2019. 12. 31. C로부터 아파트 매각대금 중 80,386,846원을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구상금채권 추심 경위, C가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 목적 및

내용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는 C의 1인 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인 C도 변제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제2호증의 1, 2, 3)에 따르면 사업 목적으로 B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 및 소매업, 농축수임산물 수출입업 및 무역업, 식품제조 가공업, 농축수임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이, 피고는 식품, 농수산물, 임산물 판매, 도소매, 유통, 수입, 수출, 무역업,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이 각 기재되어 있어, 위 두 회사는 사업 목적이 동일하거나 중복됨을 알 수 있다. B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주력으로 하던 제조업체였고 피고는 식품 수입 및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유통업체라고 피고는 주장하나, 과세정보회신에 따르면 B의 경우 폐업 전인 2017. 3. 31.까지 근로자로 F와 C만 확인되고 있어 B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농수산물 도소매업이나 수출입업 등도 영위한 이상 피고와 사업 목적이 중복됨은 부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21. 10. 25. 설립 직후부터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과도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을 거래하였는데, 위 거래처들은 B가 신용보증사고 직전까지 수년간 거래하였던 거래처였다.

4)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피고는 인적 구성이나 조직 역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B는 폐업 당시 감사 K 외에 사내이사로 C가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대표이사로 E, 사내이사로 F와 C가 각 등재되어 있는데 E는 C의 처, F는 C의 친족으로 이사진들이 C를 중심으로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고 스스로도 C가 갱생을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B는 물론 피고도 C가 경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B는 폐업 처리된 2017년도의 근로자로 1. 1.부터 3. 31.까지 C와 F만 확인되고, 피고는 설립 이후부터 2023. 12. 31.까지 사이에 근로자로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E, 2023. 11. 27.부터 2023. 12. 31.까지는 L만 확인되고 있다. 그 외 피고는 M도 L와 같이 온라인 영업 및 웹디자인을 담당하였다고 하나 M는 2024년도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L 또한 2023. 11. 비로소 입사하였으므로 피고 설립 당시 근로자로는 E가 유일하였다. 한편 피고 스스로도 일부 인정한 바와 같이 F에게 2021. 12.부터 2022. 4.까지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중국 현지 영업을 담당하였다는 F에게 2023. 1.부터 2023. 12.까지 8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F를 기타자영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설립 직후 근로자로는 E와 F 정도 확인되므로, B 폐업 직전 무렵 및 피고 설립 직후 무렵 위 두 회사의 근로자로 C와 E, F 외에 더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발행주식수는 15,000주인데, 그 중 95%는 대표이사인 E가, 나머지 5%는 사내이사인 F가 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B의 주주로는 C(51%), E(23%), N(20%) 등이 확인되고(갑제3호증의 2) 그 중 C와 E의 지분이 74%에 이른다. 따라서 B와 피고는 모두 C 부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오는 등 사실상 C가 지배하였거나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피고는 주금 납입과 관련하여, E는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F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각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에 의하면, E나 F가 스스로 주금을 조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F가 2021. 9. 2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피고의 설립을 위해 E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21. 10. 18.로부터 약 1개월 전에 F가 카드론대출로 12,000,000원을 마련하여 그 중 7,500,000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고, ㉡ F가 위 대출금을 포함한 합계 15,000,000원을 E에게 이체한 2021. 9. 23.

21:33경으로부터 불과 20여분 뒤인 21:58경 E로부터 O에게로 15,000,000원이 이체되어 위 12,000,000원 중 7,500,000원이 주금 납입에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또한 피고는 E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피고 설립 이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가 E의 친정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2021. 11.

3.부터 2021. 12. 31.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가지급금 전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21. 10. 18.을 전후하여 E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O, P 등으로부터 합계 140,000,000원, E의 다른 D은행 계좌로부터 14,000,000원 총 합계 154,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21. 10. 19. E의 위 D은행 계좌에서 O에게 80,000,000원, P에게 48,800,000원, E에게 18,000,000원 합계 146,800,000원이 도로 이체된

점, ㉔ 피고는 E가 2021. 11. 3.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게 8차례에 걸쳐 이체한 내역(을제7호증의 1)이 가지급금 상환 또는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번잡한 계좌이체 대신 송금의 편의상 곧바로 이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금을 입금한 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마저도 2021. 11. 11. 15,200,000원은 E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함께 12,048,800원이 E 계좌로 도로 이체되었고, 2021. 11. 23. 20,000,000원도 같은 경로로 그 다음 날 E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21. 12. 21. 40,000,000원은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기 직전 10회에 걸쳐 입금된 4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자금 원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지급금 상환 또는 주금 입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㉕ 피고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 및 상환 내역 등에 관한 금융거래 및 회계 자료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E가 조달한 자금의 출처, 주금 납입 내역 등을 증명할 만한 피고의 법인계좌 등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E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한편 피고가 B로부터 공장설비나 특허권 등 영업자산을 양도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이나 농수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영업특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B로부터 영업자산 등을 양도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두 회사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식품 및 농수산물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는 거래처 발굴 및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사업 초기 B의 기존 거래처들과도 거래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B로부터 무형의 영업자산을 양수하여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구상금 채무액 61,126,680원(= 원고의 잔존 대위변제금 44,124,305원1) + 확정지연손해금 17,002,375원2)) 및 그 중 원금 44,124,3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9.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5.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

1) 구상금채무 124,540,831원 - 원고가 B로부터 회수한 29,680원 - 원고가 C로부터 회수한 80,386,846원

2) 원고가 회수한 29,680원에 대한 2017. 9. 26.부터 2017. 9. 26.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손해금 8원 + 원고가 회수한 80,386,846원에 대한 2017. 9. 26.부터 2019. 12. 31.까지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17,002,367원(= 2017. 9. 26.부터 2019. 3. 31.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12,157,133원 +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4,845,234원)